-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-

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① 이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"을(모현)"은 "갑 (입소자)"이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며, 이에 “갑" 혹은 ”병(“갑”의 주보호자 / 주보호자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/ 주보호자 없는 경우 보증인을 선정한 경우도 포함)“은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.

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③ 입소 대상자 준비 서류
1. 장기요양인정서(사본) 1부.
2. 표준/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(사본) 1부.
3. 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.
4. 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1부.
5. 주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.
6. 어르신 신분증(사본) 1부.
7. 입소 시 건강진단서(1개월 이내) 1부.

필수포함 항목 : 6가지 전염성(장티푸스, 세균성이질, b형간염, 폐결핵, 매독, AIDS) 질환이 없음 증명
8. 의사소견서 1부.
9. 처방전(현재 복용중인 약)

치매약 복용시 치매검사결과지(K-MMSE, GDS)
10. 코로나 검사 결과서(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서).
11.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

12. 연계 기록지 - 타 요양원 및 주간보호 전원시
13.증명사진 2부.

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(1) 2.1:1기준

구 분		본인부담금(31일기준)				
		일반 (20%)		인상	경감 (12%)	경감 (8%)
		현행	'25.1.1부터	금액	'25.1.1부터	'25.1.1부터
본인부담금	1등급	해당없음	560,790	해당없음	336,474	224,316
	2등급		520,242		312,145	208,097
	3-5등급		491,288		294,773	196,515
비급여	식재료비 (간식포함)	해당없음	387,500 (1일:1식 3,500*3회=10500) (1일:간식 2회=2,000)		387,500 식대 간식비포함 일반과 동일	387,500 식대 간식비포함 일반과 동일
합계	1등급	해당없음	948,290	해당없음	723,974	611,816
	2등급		907,742		699,645	595,597
	3-5등급		878,788		682,273	584,015

(2) 2.3:1기준

구 분		본인부담금(31일기준)				
		일반 (20%)		인상	경감 (12%)	경감 (8%)
		현행	'25.1.1부터	금액	'25.1.1부터	'25.1.1부터
본인부담금	1등급	522,288	533,386	11,098	320,032	213,354
	2등급	484,530	494,822	10,292	296,893	197,929
	3-5등급	457,560	467,232	9,672	280,339	186,893
비급여	식재료비 (간식포함)		387,500 (1일:1식 3,500*3회=10500) (1일:간식 2회=2,000)		387,500 식대 간식비포함 일반과 동일	387,500 식대 간식비포함 일반과 동일
합계	1등급	909,788	920,886	11,098	707,532	600,854
	2등급	872,030	882,322	10,292	684,393	585,429
	3-5등급	845,060	854,732	9,672	667,839	574,393

*비급여 항목-식대비 3,500원, 간식비 2,000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.

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)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1.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2.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3. 표준/개인별이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성실한 제공 의무
4.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비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권리
5.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할 권리
② 입소자의 의무와 권리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3.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
4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5.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6.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7. 입소자의 권리 : 입소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8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③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
1) 신원인수인의 의무
1.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
2.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
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2)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⑴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⑵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

⑶ 입소자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
⑷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⑹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⑺ 입소자의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⑻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⑼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
⑽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

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⑾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(계약의 해지)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⑥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⑦ 입소자 또는 보호자 및 가족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